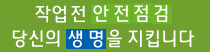


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



2015 - 교육미디어 - 705

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일반 안전조치

일반 준수사항

-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	-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,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- 바퀴의 이상 유무, 전조등 · 후미등 ·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
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	-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,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- 바퀴, 전조등 · 후미등 ·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-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
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	-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,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- 바퀴의 이상 유무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(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)의 경우 작업계획서의 작성, 필요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.
 -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· 낙하 · 전도 ·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
-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,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단, 화물자동차에 올 등 추락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
-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,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포크, 버킷,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
 -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
 -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
-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화물의 적재 ·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,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.

※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참조한다.



작업 전 **안전점검**
당신의 **생명**을 지킵니다

-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/ 실천문화 조성
- 사 업 주**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
 - 근 로 자**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, 보고 및 대응
 - 관리감독자**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

기억하세요!
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

1. 안전보건표지 부착(위험장소, 설비 등)
2. 안전보건교육 실시(위험요인, 안전작업방법 인지)
3. 안전작업절차 지키기(절차 제정, 준수)
4. 보호구 지급 · 착용(작업에 적합한 보호구)